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담조직 지정·위탁 의무화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95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전담조직 지정·위탁 의무화 등	2

I. 개요

1.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9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8.

(3) 회 부 일 : 2025. 4.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Ⅱ. 검토 의견

1. 전담조직 지정·위탁 의무화 등

- 개정안은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상담·신청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의 설치·운영 및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 굴)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상담·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 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	법률 제20846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 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 ----- ----- ----- ----- -----

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u>지정·위탁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 <u>지정·위탁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동 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의 위기 아동·청년¹⁾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5일 제정되었고, 시행일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3월 26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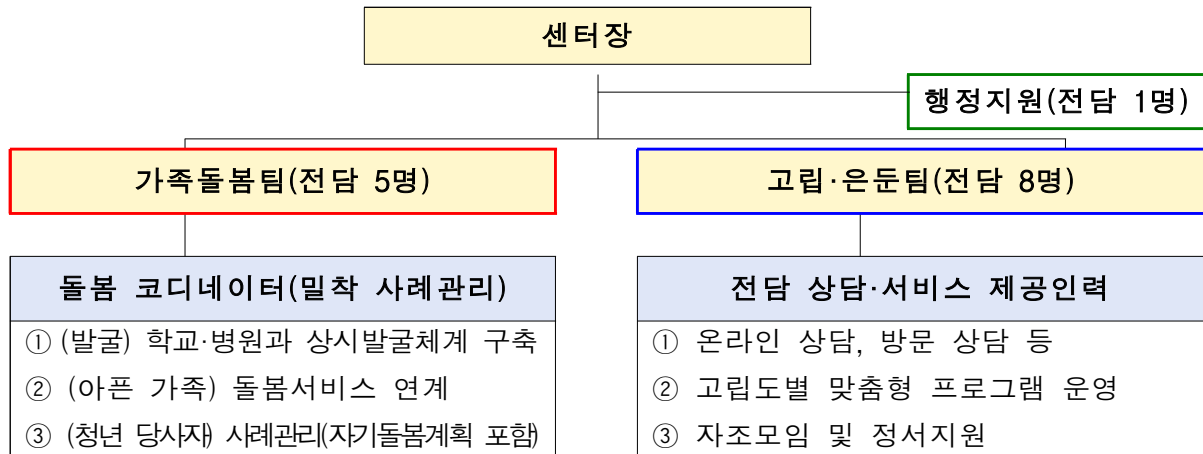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4개 광역시·도²⁾에 전담 지원체계로서 ‘청년미래센터’를 사회서비스원 또는 기업진흥원에 설치하여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³⁾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시범사업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전담조직⁴⁾에 해당하는데, 전담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 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나.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 2) 인천, 울산, 전북, 충북임.
- 3) 시범사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이 더욱 절실한 아동 집단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확대함.
-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위탁을 통하여 위기아동·청년의 발굴부터 사례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함.

<청년미래센터의 지원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주요 내용>

- (가족돌봄청년) ^(발굴) 지역 내 중·고교·병원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청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 * 전담인력이 현금지원과 연계해 자기발전계획 함께 작성, 아픈 가족을 위한 복지·돌봄서비스 외에도 교육장학금·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 자기돌봄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960명), 우리카드 先포인트 지급(자기돌봄계획에 따른 지급여부 월별 확인)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기상담) 초기상담 후 고립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 * 자조모임,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 소통기술 습득, 간단한 일 경험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마다 위기아동·청년의 발굴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및 지정·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되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분포 현황을 고려할 때,

사례관리 신청 및 접수, 상담, 지원대상자 선정,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절차의 전 과정을 전담조직이 수행하므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전담조직이 운영되어야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현재 전담조직이 4개소에 불과하므로 향후 개소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현황>

(단위: 명)

		가족돌봄청년*(13~34세)	고립·은둔청년**(19~34세)
광역시	서울	13,954	108,763
	부산	6,130	30,465
	대구	4,243	16,837
	인천	5,492	34,932
	광주	2,899	8,523
	대전	2,829	18,210
	울산	1,726	16,959
	세종	409	6,905
광역시도	경기	20,191	162,380
	강원	3,412	17,028
	충북	3,502	13,495
	충남	4,284	15,607
	전북	4,885	9,313
	전남	5,138	14,745
	경북	5,345	24,398
	경남	6,102	28,863
	제주	1,552	5,148
계		92,093	532,571

* 가족돌봄청년 규모: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2. 보건사회연구원)

** 고립·은둔청년 규모: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 ('23, 보건사회연구원)

□ 한편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전담조직을 통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⁵⁾의 발굴·상담·신청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의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하여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의 활용 등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위기아동·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상담·신청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전담조직을 의미함. ○ 전담조직 지정·위탁 의무화는 지역간 형평성 및 위기청년 지원 효과성 확보를 위해 필요 - 전담조직 의무화를 통해 위기청년 사각지대 방지 및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의 동일한 공적 지원 보장 가능 - 또한,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초기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므로 법정 지원 프로세스의 안정적 체계적 운영이 가능

문 의 처

02)6788-5498

5)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정의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